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281호 2021. 2. 1.(월)

선 람	기 관 의 장

훈 령

- 예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예천군 훈령 제426호)

고 시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1-9호)

공 고

- 「예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1-173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1년 2월 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훈령 제426호

예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예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적극행정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경상북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 규정」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적극행정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훈계는 훈계와 주의로 구분하며, 비위나 잘못의 정도가 무거우면 훈계로 처분하고 가벼우면 주의로 처분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47조에 근거하여 ‘고충민원에 대해 권익위원회 시정권고·의견표명에 따라 조치한 경우 자체감사 면책’을 위한 규정 개정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공직사회 적극행정 정착을 위한 사전컨설팅감사에 대한 면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 적극행정의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적용(제5조)
- 「경상북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 규정」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에 따라 업무 처리한 경우 면책 요건 충족(제5조)
- 처분종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제14조)
 - 훈계 처분 시 훈계와 주의로 구분
 - 훈계 : 비위나 잘못의 정도가 무거울 때
 - 주의 : 비위나 잘못의 정도가 가벼울 때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15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2월 01일

예 천 군 수

1. 사업명칭 :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산10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예안이엔지 변상무
나. 주 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효자로 7
3. 사업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산10
4. 사업개요

사업종류	사 업 내 용	사업비	비 고
대지조성	○ 대지면적 : 15,249.00㎡ ○ 주택용지 : 12,119.00㎡(21필지공급) ○ 주택외용지 · 공동보관소 및 공용주차장(6면) 465㎡ · 기반시설 등 기타용지 : 2,665㎡	166,200만원	

5. 사업시행기간 : 2021.02.01 ~ 2022. 06. 30
6. 다른 법률의 의제 주요사항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나. 산지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7. 관계서류는 예천군청 건축과(☎054-650-63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예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상위법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2018. 08. 14. 공포, 2019. 07. 01. 시행)에 따라 기존 예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 (안 제3조)

- 예천군에 사업구역을 두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예천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가진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예천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를 가진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나.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준수 의무 (안 제4조)

- 주차장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함

3. 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예천군 건설교통과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의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건설교통과
- 전화 : 054-650-6251, 팩스 : 054-650-6339
- 전자우편 : yc920128@korea.kr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 조 례 명 : 예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예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상위법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2018. 08. 14. 공포, 2019. 07. 01. 시행)에 따라 기존 예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 (안 제3조)

- 예천군에 사업구역을 두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예천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가진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예천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를 가진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나.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준수 의무 (안 제4조)

- 주차장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함

3. 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라. 규제심사 : 추후 진행
- 마. 입법예고 : 추후 입법예고 실시
-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사. 성별영향평가 : 주민복지실 의뢰 예정

예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1. 예천군에 사업구역을 두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 예천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가진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예천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를 가진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제4조(준수의무 등)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관계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12. 26.>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제14조제1항 관련)

1. 면허기준 대수

업 종	지역별 자동차 면허기준 대수			
	특 별 시	광 역 시	시	군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40대 이상	40대 이상	30대 이상	—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	—	—	10대 이상
다. 시외버스운송사업	—	—	30대 이상	30대 이상
라. 일반택시운송사업	50대 이상	30대 이상 (부산광역시의 경우 50대 이상)	30대 이상	10대 이상

비고

1.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상용자동차의 고장·검사·점검 등이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대체운행이 필요하거나 일시적인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용자동차 대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
2.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같이 경영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시외버스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외버스를 시내버스 또는 농어촌버스로 전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 표에 따른 시외버스 면허기준 대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에 대해서는 보유한 수소전기자동차 대수에 1.3을 곱하여 산출한 값(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을 보유 자동차 대수로 본다.

5.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천연가스자동차(이하 "천연가스자동차"라 한다)에 대해서는 보유한 천연가스자동차 대수에 1.3을 곱하여 산출한 값(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을 보유 자동차 대수로 본다.
6.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감차계획에 따라 택시를 감차한 경우에는 감차한 대수만큼의 택시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

업 종	대 당 면 적 (최 저)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	
1) 대 형	36㎡ ~ 40㎡
2) 중 형	23㎡ ~ 26㎡
3) 소 형	15㎡ ~ 18㎡
나. 택시운송사업	
1) 일반택시	13㎡ ~ 15㎡
2) 개인택시	10㎡ ~ 13㎡ (다만,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에 대하여는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고

1. 차고는 자기 소유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 소유로 본다.
 - 가. 운송사업자가 터미널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나. 운송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관리·운영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다. 타인이 소유한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2년 이상 임대하여 차고로 사용하는 경우

2. 차고부대시설의 면적은 차고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영(兼營)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을 위 표의 차고 기준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자기 소유 외의 주차장·차고시설 등을 6개월 이상(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4.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자기 소유 외의 주차장·차고시설 등을 한정면허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5. 차고면적기준은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동차 외에 예비자동차에도 적용한다.
6.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주식 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장과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가 주차장인 건축물을 택시운송사업의 차고로 사용하려 할 때에는 개별주차구획 및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보유 차고의 최저면적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차고로 사용하는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6부터 제19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도인정·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7.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면적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유 차고의 최저 면적기준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8.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은 차고의 위치, 보유한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원활한 출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 표에 따른 해당 면적기준의 범위에서 관할 관청이 정한다.

3. 운송 부대시설

구 분	시 설 기 준
가. 사무실 및 영업소	1) 수입금 및 배차의 관리 등 여객자 동차운송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 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추는 것 2) 운행계통의 기점·종점 및 운행경 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상 필요한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정류소	정류소는 여객의 이용에 편리한 장소 에 설치하되, 매표시설 및 표지 등을 설치할 것
다. 차고설비 및 차고부대시설	1) 차고는 포장을 할 것 2)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정비 및 세 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 다 만, 차고부지 외의 지역에 점검·정 비시설 또는 세차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차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안 전·배차, 그 밖에 운송사업에 지장 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준 에 맞는 것으로 본다
라. 휴게실 및 대기실	운송종사자가 대기하거나 휴식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규모의 설비를 갖추는 것
마. 교육훈련시설	안전운행과 서비스의 향상 등 운수종 사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할 수 있 는 교육시설을 갖추는 것

비고

1. 운수종사자가 5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목 중 사무실과 다목의 차고설비 및 차고 부대시설의 시설기준에만 적용한다.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위 표의 기준 중 정류소의 기준을 적용하

지 않으며,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나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위 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6. 2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제13조 관련)

업종 구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대수	○ 20대 이상	○ 1대
사무실 및 영업소	○ 영업에 필요한 면적	○ 없음
최저보유 차고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화물자동차 의 종류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업무형태	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	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 다만, 집화등만을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고,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의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그 운송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을 수행할 것
------	---------------	--

비고

1.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운송주선사업자인 경우에는 허가기준에 맞는 사무실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2. 차고는 자기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사용부분은 자기 소유로 본다.
 - 가. 화물터미널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다. 1년 이상 장기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화주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중 법정 대수 초과분만을 말한다)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 라. 타인 소유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1년 이상 장기 임대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 마. 창고·판매·제조업 등 수송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겸업하는 운송사업자가 수송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 바. 창고사업자인 화주와 1년 이상 장기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그 창고사업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3. 최저보유차고면적 기준을 산정할 때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는 이를 연결

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대당 면적으로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를 세워서 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면적을 대당 면적으로 한다.

4. 화물자동차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 등 차고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은 차고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을 위 표에 따른 차고기준 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자기 소유 외의 주차장·차고시설 등을 6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6.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주식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과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가 주차장인 건축물을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경형·소형·특수자동차만을 보유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개별주차구획 및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보유차고면적 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차고로 사용하는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6부터 제19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도인정,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7. 관할관청은 지역의 운송사업자의 경영실태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유차고면적 기준을 위 표에 따른 기준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8. 업종별 화물자동차의 종류를 적용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가 구조변경된 경우 화물자동차나 특수자동차의 유형은 구조변경 후의 유형을 기준으로 하고, 최대 적재량은 구조변경 전의 최대 적재량을 기준으로 한다.